



지난 3월 3일 제166회 임시국회에서 '도서관 및 독서진흥법'이 통과됐다. 사진은 지난해 8월의 독서진흥법 공청회.

## '도서관 및 독서진흥법' 국회통과

지난 3일 제166회 임시국회서... 독서환경 변화의 긍정적 전기 마련

책의 해 역점사업으로 추진됐던 '도서관 및 독서진흥법'이 지난 3월 3일 제166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.

1993년 12월 17일자로 강인섭 의원 외 20인의 발의로 제출된 '도서관 및 독서진흥법'은 도서관을 비롯한 문고시설 등을 확충하여 일반국민에게 독서기회를 확대, 제공하기 위하여 도서관진흥법(1991년 3월 8일 제정, 법률 제4352호)을 폐지하고 법의 명칭을 '독서진흥법'에서 '도서관 및 독서진흥법'으로 바꾸어 새로운 법으로 제정된 것이다.

이 법은, 전국에 걸쳐 문고를 광범위하게 설치토록 적극 권장하고

(제7장), 국민독서진흥과 그 활성화를 위한 '독서진흥' (제9장)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문 10장 5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.

문고 설치에 관한 제7장은 이 법의 핵심내용으로 열악한 도서관 시설을 극복하고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문고를 설치·운영하여 일반국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. 즉 전국의 읍·면·동과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장, 주거단지, 건축물 등에 공립, 또는 사립문고를 설립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토록 하고 있다(법 제39조).

독서진흥에 관한 사항(제9장)은,

문고의 설치와 함께 독서의 생활화, 독서교육, '독서의 달' 제정 등 범국민적 독서운동을 펼침으로써 국민들이 책을 많이 읽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. 이 조항에 의하면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, 도서관문고 등 독서진흥을 위한 시설 설비를 확충해야 한다.

그동안 쟁점사항으로 부각됐던 독서지도요원,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의 설치, 도서관협회 등의 설치에 관한 문제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. 우선 독서지도요원에 관한 사항은, 당초 문고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

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문고에 사서직원을 두거나 독서지도요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, 독서지도요원을 삭제하고 "사서직원을 둘 수 있다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도서관 발전위원회와 독서진흥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규정했던 기존의 시안에 비해 이번에 마련된 법률에서는 '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'로 명칭을 바꾸어 규정하고 있어 양자간의 협력체계를 강조하고 있다.

또한 도서관협회 외에도 문고협회 등 기타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. 이에 따라 이 법의 부칙 제5조에서는 이미 설립되어 있는 '새마을문고중앙회'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.

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의 설치는 이 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, 정부는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, 시설, 자료의 확충, 사서직원의 자질 및 연구, 기타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, 이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,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, 기금의 운영에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토록 하고 있다.

이러한 내용의 '도서관 및 독서진흥법'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은 그리 수월치 못했다. '독서진흥법'이라는 이름으로 이 법의 시안이 마련된 것은 지난 4월이었으나 8월 4일 열린 1차공청회에서부터 위의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에 대해 나와 법 제정시기가 지금까지 미루어졌던 것. 도서관협회와 출판협회간의 이견에 대해 지난 10월 16일 책조위원회 김나준 회장과 도서관협회 박

계홍 회장의 전격 합의가 이루어져 국회에 상정하게 된 것이다.

그러나 이 법은 당초 시안에서 '의무사항'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들을 '권장사항'으로 바꾸어 실질적인 실효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. 책의 이해 조직위원회가 지난 해 7월 1일부터 시안을 마련하기 시작한 독서진흥법에는, 읍·면·동에 1개 이상의 공공문고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고, 일반사업장과 주거단지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시장·군수가 사설문고 설치를 권장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었다. 그러나 현재 국회를 통과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이를 모두 권장사항이나 '할 수 있다'는 사항으로 바꾸어 놓았다. 또한 독서진흥기금도 이 법은, 당초에 정부의 출연금과 민간의 기부금은 물론 체권발행, 공원이나 고궁의 입장료에 기금을 포함시켜 마련토록 했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정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. 그중에 대표적인 사항은, 기존의 국공립도서관이나 각급 학교 도서관으로 한정되어 있던 독서나 도서대출이 이 법의 제정으로 마을이나 직장 등 독자가 생활하고 있는 주변의 문고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된 점이다. 부수적으로는 이와 같은 독서환경변화가 도서의 잠정구 매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점도 예견되고 있다.

출판협회 정종진사무국장은 이 법의 입법취지를 "국민의 독서생활화에 있다"고 하면서 "오는 7월 이 법에 따른 시행령이 발표되면 일반국민들이 책을 가까이하고 읽을 수 있는 '여건'이 충분히 마련될 것"이라고 강조했다.

**出版企劃翻譯**

(중국도서기획 번역전문)

《全分野·全種別》

**한중출판정보학회**

• 新着原書·뉴프로젝트 多量保有

代表 黄秉國

(前 숙대교수·출판사·기획실장·중국학 전공)

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0단지 31동앞

전화: 645-7052

Pd Pub.  
design

• 디자인 · 광고디자인  
• 일러스트레이션  
• 심볼마크 · 로고서체 디자인  
• 브로셔 디자인

전화(02)953-0621

• Bookdesign  
DESIGN 藝園

표지 디자인부터  
본문 편집디자인까지  
출판과 관계된 모든 디자인을  
하고 있습니다.

디자인 예원  
서울 강남구 신사동 554-14 프론트B/D 301호  
TEL : 518-7621~2 FAX : 518-7621

• 도서상품권



보낼수록 좋은선물  
받을수록 기쁜선물

한국도서보급(주)  
서울특별시 구로구 동신동 295-15  
TEL: 852-4769/FAX: 852-4768  
152-0111